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895호
- 다. 제출일자 : 2021. 10. 15.
-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2. 제안이유

- 가. 2021년 5월, 수도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 2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상수도과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함.
- 나.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용과 기준을 상수도와 일치시킴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2022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폐지

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상수도과 업종구분을 일치시킴.

(안 별표 2 나목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나.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34조제1항제3호)

다. 하수도사업과 무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면사업에 대한 일반 회계 등의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34조제1항 본문 단서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8. 19.~9. 8.)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하수도 조례”）」의 별표 2에 하수도 사용업종 중 현행 ‘공공용’을 폐지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 타 회계로부터 경비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 누수 등과 관련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의 내용과 기준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수도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제1항, 안 별표2)

현행	개정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 설>	제34조(감면) ① -----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 12. (생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현행					개정안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구분 업종	2022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180	1,290	1,420		50초과	1,420
욕탕용	500이하	360	400	440	욕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450	500	55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520	570	630		2,000초과	630
공공용	50이하	610	670	730	일반용	30이하	500
	50초과~300이하	970	1,060	1,170		30초과~50이하	1,000
	300초과	1,100	1,210	1,330		50초과~100이하	1,520
일반용	30이하	420	460	500		100초과~200이하	1,830
	30초과~50이하	830	910	1,000		200초과~1,000이하	1,920
	50초과~100이하	1,250	1,380	1,520		1,000초과	2,030
	100초과~200이하	1,510	1,660	1,830	유출지하수	㎡당	400
	200초과~1,000이하	1,580	1,740	1,920			
	1,000초과	1,670	1,840	2,030			
유출지하수	㎡당	330	360	400			

※ 비교

1. 매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요율로 날 수대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및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신설>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삭제>	<삭제>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누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누수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적용일 전날까지의 누수량에 대해서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폐합 관련

- 개정안 별표2는 현행 별표2 중 가목 및 나목의 하수도 사용업종 중 ‘공공용’을 삭제하여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한편, 비고 내용을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표 1] 참조)하려는 것임.
- 하수도 사용업종의 구분은 「하수도 조례」 별표2 나목에서 「수도 조례」 별표 1에 규정된 급수종별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지난 2021.5.20일 「수도 조례」가 ‘공공용’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표 2] 참조)됨에 따라 이를 「하수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표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1 급수종별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조례 제7997호, 2021. 5. 20.)	
업종별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	일반용	가.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 나.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 다.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로 한정)

공공용	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 (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라.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로 한정) 마.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사. 학교(유치원 포함) 아. 정당 자. 병영 차. 신문사, 방송국 카.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타.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파.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하.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거.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 운송업 너. 그 밖에 가정용 또는 욕탕용에 속하지 않는 급수

[표 3] 상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주요 내용(「수도 조례」 개정, 2021.5.20.)

○ 조례개정일: 2021. 5. 20. ○ 개정조례 주요내용 - 요금인상 : 2021.7.1.~'23년까지 누적 34.3% 수도요금 인상 - 업종 통폐합 : 2022.1.1.부터 '공공용' 업종을 폐지하고 일반용으로 통합 - 누진구간 개편: 2021.7.1.부터 업종별 누진구간 간소화, 2022년부터 전업종 단일요금제 채택(누진제 폐지) - 개편현황			
구 분	기 준 누진단계	연도별 개정 내역	
		'21.7.1.사용량부터	'22.1.1.사용량부터
가정용	3단계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	단일요금제
욕탕용	3단계	2단계로 축소	단일요금제
공공용	3단계	2단계로 축소	업종 폐지
일반용	3단계	2단계로 축소	단일요금제

-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이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급수 업종이 수도와 하수도가 서로 불일치할 경우 시민 혼란 및 민원 발생 소지¹⁾가 있고,
 - 최근 도시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일건물에 공공시설과 일반 상업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의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존 업종 퇴거 및 신규시설 추가시 업종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조례가 업종 구분을 수도 조례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한편, 동일한 일반사무 용도의 건물임에도 공공용으로 분류되는 공공청사와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하수도사용료 요율 상 일반용인 민간회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업종구분 체계에 대해 민간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표 4] 참조)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통해 업종 통폐합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1) 예시) ‘학교’의 경우 2022.1.1.일부터 상수도 업종은 ‘일반용’ 적용되나 하수도의 경우 업종 미 변경시, ‘공공용’이 적용되어 업종별 요금 산정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표 4] 공공용과 일반용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업종체계 관련 민원사례

- A구청 청사와 민간 B회사 사옥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일반사무 용도의 건물로 총 물사용량도 월 3,000㎥로 동일함.
- 이 경우 A구청 청사는 공공용 요율을 적용받으며, B회사 사옥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

구분	사용 구분(㎥/월)	단가(원)	구분	사용 구분(㎥/월)	단가(원)
공공용	50이하	730	일반용	30이하	500
	50초과~300이하	1,17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300초과	1,33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사용 용도	월 사용량	공공용 적용 시 (A구청 청사)	일반용 적용 시 (민간 B회사)	차 액	비 율
일반사무실	3,000㎥	3,920,000원	5,890,000원	1,970,000원	50.3%

- 민간 B회사는, A구청 청사와 같은 일반사무실 용도로 같은 양의 물을 쓰고 있는데, 왜 A청사에 비해 무려 50.3%에 달하는 더 많은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과연 형평성에 비추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불만 제기

- 다만, 현행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공공용’의 평균요금(1,190원/m³) 대비 ‘일반용’ 평균요금(1,320원/m³)이 130원 높은 상황으로,
 -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하수도사용료 평균단가가 약 10.9%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연간 세입 증가액은 전체 약 101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계²⁾됨.
- 한편, 앞 서 개정된 「수도 조례」에 의해 ‘22.1.1일부터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는 수도 요금의 경우도 ‘공공용’의 평균요금(980원/m³) 대비 ‘일반용’ 단일요금(1,160원/m³)이 180원 높아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가 약 18.4%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 ※ ‘공공용’ 조정량(77,545,486m³/년)×평균 하수도사용료 상승 130원/m³=10,080백만원/년

- 만일 본 개정안이 2022.1.1.일자로 시행될 경우 수도와 하수도의 인상효과가 합쳐지면서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의 경우 [표 5]에서와 같이 월 사용량 50 m^3 부터 10,000 m^3 이상의 구간별로 최소 1만원부터 797만원 이상까지 인상액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표 5]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될 경우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요금 증감 추계

사용량 (m^3 /월)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상·하수도 합계			
	'21.7.1.~ '21.12.31.	'22년	인상액 (월)	21년 현재	일반용 통합 시	인상액 (월)	'21년 하반기 현재	일반용 통합 시	인상액 (월)	인상률 (%)
30	27,600	34,500	6,900	21,900	15,000	△6,900	49,500	49,500	-	-
50	46,000	57,500	11,500	36,500	35,000	△1,500	82,500	92,500	10,000	12.1%
100	92,000	115,000	23,000	95,000	111,000	16,000	187,000	226,000	39,000	20.9%
200	184,000	230,000	46,000	212,000	294,000	82,000	396,000	524,000	128,000	32.3%
300	312,000	345,000	33,000	329,000	486,000	157,000	641,000	831,000	190,000	29.6%
500	520,000	575,000	55,000	595,000	870,000	275,000	1,115,000	1,445,000	330,000	29.6%
1,000	1,040,000	1,150,000	110,000	1,260,000	1,830,000	570,000	2,300,000	2,980,000	680,000	29.6%
5,000	5,200,000	5,750,000	550,000	6,580,000	9,950,000	3,370,000	11,780,000	15,700,000	3,920,000	33.3%
10,000	10,400,000	11,500,000	1,100,000	13,230,000	20,100,000	6,870,000	23,630,000	31,600,000	7,970,000	33.7%
149,833 (서울대)	15,826,320	17,230,950	1,404,630	19,207,880	30,960,990	11,753,110	355,034,210	472,889,400	121,234,730	34.1%

- 따라서, 이미 개정된 「수도 조례」와 본 「하수도 조례」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공공용’ 업종 수용가가 체감할 요금인상 부담감을 고려하여 업종은 통합하더라도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존 요금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인상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975, 2021.5.31.)과,
 - 상·하수도 요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업종통합에 따른 일반용 요금 적용 시행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물순환안전국에 요청(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0095, 2021.10.7.)한 사실에서도 신중함을 요하고 있음.

나. 감면규정에 대한 타회계 경비보전 단서 신설 관련

- 안 제34조제1항은 본문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3)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 다. 생략

2. 생략

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표 1〕 참조) 하려는 것임.

- 현재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2017.7.1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제정(시행 2017. 7. 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⁴⁾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 중으로,
 - 「지방공기업법」 제14조⁵⁾ 및 동법 시행령 제5조⁶⁾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하나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설치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한편, 수도사업의 경우 현행 「수도 조례」 제31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

4)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6) 「지방공기업법」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 다. (생략)

2. (생략)

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⁷⁾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개정안이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손실경비에 대해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일반회계 등에서 보전이 필요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표 4] 참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개정안 시행 후 타회계로부터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감면 유예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2020년 결산 기준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연간 약 217억 83백만원으로, 이 중 2017.7월 지방직영기업 전환 이후 신설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복지정책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지방직영기업 전환 이전에 설치된 감면규정에서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

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생략

회계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 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취지에 맞게 경비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6] 하수도사용료 감면 현황(2020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근거 조항	감면대상(사유)	감면 시작일 (시행일 기준)	감면대상 (수용가) 수	감면액 (연간)	비 고
제34조	합계	-		21,782,984	
제1호	천재지변 (면제)	1983.10.24.	-	-	
제2호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면제)	1983.10.24.	-	-	
제3호	관 노후 등에 의한 불출수 (면제)	1983.10.24.	42,402 (건수)	5,979,664	-하수도사업
제4호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 (차이량 면제)	1983.10.24.	45 (수용가수)	3,440,286	-하수도 사업 예) 아이스크림, 음료 제조업
제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10m³/월 면제)	2001. 3.20.	143,874 (세대수)	8,038,064	-복지정책실 소관 -법령에 공공요금 감면 근거규정
제6호	준공업지역 내 공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1998. 4. 6.	484 (수용가수)	1,619,015	-경제정책실 소관 -실태조사 필요
제7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1999. 4.15.	244 (수용가수)	208,882	-복지정책실 소관 -향후 일반회계 보전 요청 예정
제8호	물재생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가구 (면제)	2006. 1. 5. (’06.2월 납기분부터)	14,255 (수용가수)	1,413,280	-하수도사업
제9호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 1. 1. (’17.1월 사용분부터)	47,166 (가구수)	1,007,725	-자체 감면
제10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월 10m³까지 사용량 면제)	2020.1.1.신설	1,901 (명)	74,035	-복지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지원 중
제11호	청계천 부근 등 화장실 개방 (해당 시설 사용료 면제)	2006. 1. 5.	27 (수용가수)	2,033	-자체 감면

다. 누수에 따른 감면규정 정비 관련

- 다음으로, 안 제34조제1항제3호는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에 감면된 지역인 경우에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던 현행 규정을 본인의 관리 과실에 따른 양변기 누수량만큼은 면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이는 지난 2019.7.18.일 수도 조례가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양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268호)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을 통일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 수도 조례의 개정이 2019년에 이루어졌음에도 지금까지 하수도 조례 정비를 간과함으로써 세입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하겠음.
- 참고로, 2020년 기준 누수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연간 42,402건 약 60억원으로,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양변기 누수에 대한 감면을 제외할 경우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연간 약 20억원 증가할 것⁸⁾으로 추계됨.

8) 서울시는 누수로 인한 감면액 중 약 1/3이 양변기 누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개정된 「수도 조례」가 수용가 업종 구분 중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함으로써 「수도 조례」의 업종구분을 따르고 있는 「하수도 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 현행 「수도 조례」와 달리 규정하고 있던 누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공공목적의 감면규정에 대한 타회계 경비보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함.
- 다만, 본 개정안이 안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경우, 이미 요금제 개편(누진제 폐지 및 공공용의 일반용 통합)이 이루어져 같은 시행일에 요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 요금과 겹치면서 ‘일반용’으로의 통합에 따른 인상 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업종구분은 「수도 조례」와 통일시키되 기존 ‘공공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현행 요금체계를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요금인상 효과를 억제하여 현행 ‘공공용’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